

- 이상근 이사 : 사임의 시기에 대하여 설명을 요함.
- 조현대 대표이사 : 11월18일이 임기 만료 날짜라고 설명하고 다른 이사님의 연임에 대하여 질문 함.
- 이상근 이사 : 연임을 약속하였음.
- 조현철 이사 : 연임을 약속하였음.
- 이옥규 이사 : 연임을 약속하였음.
- 김태조 이사 : 연임을 약속하였음.
- 황혜옥 이사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와 함께 김태조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통과 됨.

## 제2호 의안 외부이사 선임의견

- 조현대 대표이사 : 본 사안은 사회복지사업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(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 이상을 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합니다.
- 이옥규 이사 : 그럼 이번 사임하는 두분 이사자리에 외부이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입니까?
- 조현대 대표이사 :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법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법적조치가 있다고 이사들에게 설명함.
- 김태조 이사 : 시기를 놓치지 말고 외부이사 제도로 잘 이행해주길 바랍니다.
- 조현철 이사 : 외부이사 2배수 추천을 받고 선임 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함.
- 이상근 이사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와 함께 이옥규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통과 됨.

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